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영업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6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자영업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1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4

및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영업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 보호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육아기간 급여’를,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3항 및 안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험료) ①·② (생략)	제6조(보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	③ ----- ----- ----- ----- ----- -----

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지원, 제77조의11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

제5장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기간 급여 등의 특례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
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
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
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
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이하 “육아기간 급여”라 한
다)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
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
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
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
의 지급 요건·수준·기간과 신
청·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신 설>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자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3(준용) ① 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여의 반환명령,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간급여”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간 급여”로 본다.

여”로, “육아휴직”은 “육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육아기간 급여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육아기간 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장”은 “제5장의 4”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각각 “육아기간 급여”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16조(벌칙)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5장의4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¹⁾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²⁾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있도록 하고 있고, 보험료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보수(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7등급 중에서 선택한 보수액의 2.25%³⁾⁴⁾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⁵⁾

-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 4) (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근로자, 사업주 반씩 부담)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6(근로자, 사업주 반씩 부담)
 - 5)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보수 및 지급기준 >

- ① (기준보수 선택)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23.1.1. 시행)

- ②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0%, 고안·직능 0.2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9)

(단위: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③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 120~210일 지급

(고용보험법 제69조의4, 제69조의5)

*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보수액 총합 / 피보험기간 총일수

-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41조, 제50조, 제69조의2~제69조의9
- 지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추세,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이전 등

- ④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29조, 제31조
- 훈련비: 기준보수액과 관련 없이 300~500만원 한도 지원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

- 훈련장려금: 월 36만원 한도 지원(총 140시간 이상 과정, 80% 이상 수강)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역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의 중단 또는 소득 감소를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보험자와는 달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에게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補填)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⁷⁾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주요 지원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출산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육아휴직 제도 혜택의 수혜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제도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을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현행법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7) < 2018~2022년 합계 출산율 >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출산율	0.98	0.92	0.84	0.81	0.78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다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임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기간 급여 등이 지급될 경우 육아 예정인 자영업자에 가입이 집중되어 고용보험의 재원 고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현행법상 출산전후급여는 지급되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으로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의 휴업은 사업 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근로시간 감축 등 보다 유연한 지급 요건 설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한편, 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에 대한 소득 보전의 개념이고, 휴직 이후 일자리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임.

그런데 개정안은 육아기간 급여 등의 지원대상을 피보험자였던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제도 취지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 자영업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⁸⁾

8)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짧은 계약관행을 반영하여 출산전후급여의 대상을 피보험자였던 자까지 확대하였는데, 자영업자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차이가 있다는 의견임.

< 육아 및 출산전후 급여제도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

	현행			개정안 추가 내용
구분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 급여	육아기간 급여/ 출산전후 급여
대상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요건	육아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⁹⁾ 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법 제70조)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법 제75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제104조의9) 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18개월 동안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 대통령령에 위임)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건강보험과 가족수당기금, 스웨덴은 ‘부모보험’이라는 별도의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하여 자영업자에게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9) 「고용보험법」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음('24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 주요 선진국의 돌봄 관련 육아지원제도 >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게 모성휴가(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로 여부 관계없이 부모시간, 모성휴가 급여 지급	근로자, 자영업자, 구직자, 학생까지 포괄적 지원
건강보험(모성휴가)·가족수 당기금(육아휴직) 등 재원 활용	가족기금(부모수당), 건강보험기금(모성휴가) 등 재원 활용	별도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으로 재원 총당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재구성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대상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지원 필요성에
는 공감하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육아지원제도를 적용하
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성격, 휴직 개념 적용 및 소득 확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¹¹⁾

문 의 처

02)6788-5539

11) 참고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출산급여 지급하고 있음(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150만원)

별첨1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대상인 외국사례(자료:고용노동부)

□ (스웨덴) 스웨덴에서 소득활동(피고용, 자영업)을 하거나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부모들은 육아휴직수급 자격을 지님

○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480일(약 16개월)*, 육아휴직 사용기한은 자녀가 12세 되기 전 혹은 5학년까지임(4세 이후에는 96일만 사용 가능)

* 부모가 똑같이 나누어 사용하면 240일씩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휴직기간을 1년에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에 3회 이상도 고용주 동의하에 사용 가능

○ 자영업자 유형 및 급여기간별로 금액 차등 지급

수급요건		급여기간: 총 240일(개인별)	
		195일	45일
자 영 업 자	일반사업자	SGI의 77.6%	SEK 180
	스타트업 사용자 (SGI만큼 벌 수 있는 경우)	본인과 동일한 의무,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첫 24개월에 준하는 월급의 77.6%	
	아무 소득이 없는 사업자 (스타트업 제외)	일 SEK 250	

(SGI: 상병급여와 부모급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 소득)

□ (독일) ① 무급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시간 제도와 ② 육아기 소득보전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제도인 부모수당 제도*를 운영

*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했을 때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부모수당은 시민권기반 급여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용자, 실직자, 전업주부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수급할 수 있음

구분	요건
일반수급요건	① 자녀를 직접 돌봄, ② 자녀와 동거, ③ 근로중단 또는 주당 32시간 미만 근로, ④ 독일 거주
가족요건	① 친생부모, 입양부모 상관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8세 미만을 양육하는 경우 ② 어린이의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 자녀를 직접 키우지 못할 경우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3촌 친족도 신청 가능
수급불가요건	① 위탁부모는 신청할 수 없음 ② 최상위 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급기간과 급여수준은 적용가능한 수당의 유형에 따라 다양

구분		기본부모수당	부모수당플러스	파트너십보너스
수급기간	수급기간	12개월+ 2개월(파트너달*) *파트너달 : 배우자도 수급할 경우 추가로 부여	24개월+ 4개월(파트너달)	· 기본부모수당기간+2개월 · 부모수당플러스기간+3~4개월 · 연속이용해야 함
	소득 및 근로 조건	자녀 출산 전보다 소득 감소해야 수급	자녀 출산 후 파트타임 근로	· 부모가 동시에 근로시간 주당 24~32시간 이내 근로 · 직업훈련기간은 32시간 이상이 어도 가능
	수급제한	14개월 이후 수급 불가	-	-
급여수준		자녀 출생 전 별던 소득의 65% ※ 자녀 출생 이후 소득이 없으면 이전 소득의 65% 소득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 소득과 출생 후 소득차이의 65%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 부모수당의 1/2 이상 받을 수 없음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부모수당의 1/2 이상 받을 수 없음

□ (프랑스)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이용을 위해 휴업신청을 해야함(2년 限)

구분	내용	비고
휴직기간	자녀 1~2명: 1년(연장 가능 횟수 2번) 자녀 3명 이상: 1년(연장 가능 횟수 5번)	근로시간 단축시 16~32시간 근로 가능
휴직 이용자격	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로 필요	자영업자는 채무있는 회사 휴업 불가
육아보조금 급여	· 육아수당: 정액급여 (▲근로면제: 월 428.71유로, ▲근로시간 50% 이상 단축: 월 277.14유로, ▲근로시간 20~50% 단축: 월 159.87유로) · 기초수당: 정액급여	모성휴가 이후 12개월 (부모 1사람당 6개월)

□ (캐나다) 자영업자는 12개월 전 자발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지난 52주간 8,255달러 이상('23년 기준) 순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	휴가휴직기간	급여소득 대체율	주당 최대 급여	비고
육아휴직 기본급여	35주/40주 (부부 모두 사용시 5주 추가)	55%	650달러	· 부모 함께 사용하면 기본부모급여나 연장부모급여 중 한가지로 동일 · 기간을 한꺼번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기간 안에 사용해야 함
육아휴직 연장급여	61주/69주 (부부 모두 사용시 8주 추가)	33%	390달러	· 기본 연장 중 하나 선택시 변경 불가